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 (안 제14조의3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, 경제자유구역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선정 과정이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선정 심의 절차를 삭제하여 지원조건 및 절차 간소화 추진

현행	개정안
제14조의3(입주국내복귀기업) 법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. 1. 지역 간의 균형발전 2.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.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	제14조의3(입주국내복귀기업) 법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”이란 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. <각 호 삭제>

다. 입법효과

-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독려하고,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
2.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 (안 제28조제6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경제자유구역 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, 지역산업 육성의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경제자유구역 개발, 기업 유치, 입주기업 지원 등을 전담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역할을 강화

현행	개정안
제28조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<신설>	제28조(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) <u>⑥ 법 제27조의4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지역산업 육성의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특구와의 연계·협력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</u> <u>1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</u> <u>2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</u> <u>3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</u> <u>4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의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인정하는 특구</u>

다. 입법효과

- 지역 내 특구 간의 연계·협력 강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거점 효과 제고

3.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(안 제5조의2제4항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·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,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함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관리권자인 시·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함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)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6.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<u><신 설></u>	제5조의2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) ④ ----- -----. 6. ----- ----- <u>마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제2호의 관리권자인 시·도지사가 동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</u>

다. 입법효과

- 경제자유구역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관리권자인 시·도지사가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입주업종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기능 및 기업 지원 강화 기대

4.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 (안 별표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단일금액으로만 분양 가능하여 입지여건이 불리한 곳은 미분양이 장기화됨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산업시설용지는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

현행	개정안
[별표1] <신설>	[별표1] <u>4.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.</u>

다. 입법효과

- 산업시설용지 전체 분양율 제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효과 제고

라. 그 밖의 참고사항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0조(분양가격의 결정 등)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(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. 다만,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5. 통합특별시 반영(안 제2조, 제2조의2, 제11조의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‘통합특별시’를 신설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법」 제정을 반영할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
※ ‘특별시·광역시’를 ‘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’로 개정

다. 입법효과

- 법률간 정합성 제고

5. 오기 정정 (안 제6조의3, 제20조의5, 제27조,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인용 법률의 띄어쓰기 오류 등 일부 조문의 오기 수정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조문의 오기 수정

다. 입법효과

- 법률 조문의 정확성 제고